

울산지방법원 2021. 12. 14 선고 2021가단904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2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대 149㎡ 지상 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주택 95㎡ 중 별지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9㎡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변론 없이 하는 판결)